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제정 : 2008.12.01
개정 : 2014.11.01
개정 : 2019.07.10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05.01
개정 : 2023.10.16
개정 : 2025.03.01

제1조(근거)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및 본 대학교 「학칙」 제26조의3에 의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12.01., 2025.03.01.>

제2조(목적) 전문대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산업체 재직경력자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제3조(신청 및 인가) 본 대학교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학사과정의 모집단위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위로 하되, 학과 명칭은 「학칙」에 의한다. <개정 2020.03.01.>

②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설치인가 기준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하며, 연간 모집인원은 학칙에서 정한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12.01.>

제5조(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연구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 입학 사정, 자체평가 등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1.12.01., 2023.10.16.>

②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점검,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과에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연구회(이하 “교육과정 연구회” 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1., 2021.12.01.>

③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연구회는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 <개정 2021.12.01.>

제6조(수업연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문대학교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 ② 전문대학교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제7조(지원자격) ①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01., 2025.03.01.>

1.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위 이상의 자로 관련분야 산업체에서의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1.12.01., 2025.03.01.>

2.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자,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03.01., 2025.03.01.>

② 제1항의 동일계열 학과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신설 2025.03.01.>

제8조(동일계열의 인정 범위) ① 동일분야(계열) 관련학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문학사과정의 이수교과목을 심의하여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개정 2021.12.01.>

② 동일분야(계열)내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를 학과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학점 관련성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학점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별도로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1., 2021.12.01.>

③ 관련성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01.>

제9조(산업체의 범위 및 관련분야) 산업체와 관련분야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입학지원서류)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개정 2021.12.01.>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산업체 재직증명서(4대보험 관련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지원자만 해당)
<개정 2021.03.01.>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입학전형방법) ①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면접고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학년도 모집요강에 의해 정하며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1.12.01.>

제12조(입학자격 재직기간의 기준산정 시점)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재직기간의 기준산정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01.>

1. 대학교(산업대학교·교육대학교, 원격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 학교 입학 이후 <개정 2021.12.01.>
2.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때 이후 <개정 2021.12.01.>
3. 독학사학위제도를 통해 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인정 시험 중, 학위 취득을 위해 응시한 최초의 시험을 합격한 때 이후 <개정 2021.12.01.>

제13조 (학생모집 시기) 학생의 모집 시기는 모집요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미등록 충원) 학생의 미등록충원은 매년 교육부가 지정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2학기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11.01., 2021.12.01.>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 모집단위별로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연구회에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03.01.>

제16조(교육과정의 운영) 전공심화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01.>

1. 시장환경변화 등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
2.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

제17조(학급의 편성) 40명 이하의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8조(수업의 형태) 주간, 야간, 주말반 중 모집단위별로 총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9조(최소이수학점) 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에서 인정 취득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20학점미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학기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2021.12.01.>

제20조(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 전문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의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1.12.01., 2025.03.01.>

제21조(학위명칭 및 수여) 학사학위의 종류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산업대학교의 학위를 준용하여 학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4.11.01., 2021.12.01.>

제22조(학사관리 원칙) 학기, 수업일수, 휴·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학생활동, 상벌 등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전문학사과정과 동일한 학사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3.01., 2021.12.01.>

제23조(자체평가)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학과는 매 학년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3.01.>

제24조(모집정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모집정지를 한다.

1. 당해연도 신입생 충원율 0% 학과
2. 2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50% 또는 신입생 충원인원 7명 이하인 학과

[본조 신설 2022.05.01]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세부사항의 결정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이수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140학점
2.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1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초과학기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

제3조(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 변경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2년제학과 80학점, 3년제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

동일 계열 기준표

학과	동일계열 학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건설과, 건설교통과, 건설시스템과, 건설정보과, 건설환경과, 도시건설과, 지리정보토목과, 토목건설과, 토목과, 토목도시과, 토목설계과, 토목환경과, 토목환경시스템과, 철도시설토목과, 도시환경조경과, 지적정보과 등 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등 유사학과
뷰티학과	뷰티과, 뷰티케어과, 뷰티코디네이션과, 약손피부미용과, 의료미용과, 의료피부미용과, 토털미용과, 피부과, 메이크업과, 네일미용과, 피부건강관리과, 향장피부미용과, 뷰티미용과, 뷰티아트과, 뷰티웰니스과, 뷰티케어과, 미용건강과, 미용계열, 미용과, 미용예술과, 미용피부화장품과, 박승철헤어과, 방승헤어미용예술학과, 보건미용과, 뷰티디자인계열, 뷰티디자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반려동물 전공, 반려동물케어과, 반려동물학과, 반려동물문화학과,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리과, 반려동물라이프계열, 애견미용 및 애견관리과 등 유사학과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과
방사선학과	방사선과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과